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0,373,549	13,211,206
일반회계	391,287,086	11,738,613
특별회계	49,086,463	1,472,594
공기업특별회계	41,285,767	1,238,573
상수도공기업	16,400,785	492,024
하수도공기업	24,884,982	746,549
기타특별회계	7,800,696	234,021
의료급여기금운영	1,122,835	33,68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01,166	12,035
수질개선	522,008	15,660
농공지구조성사업	2,468,802	74,064
공영개발사업	444,271	13,32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75,855	11,276
주택사업	1,935,193	58,056
기반시설	17,890	537
장기미집행	512,676	15,3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8,62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제3회 추경예산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